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  
응 대처버버버 대응매뉴얼  
2 버

---

---

**김미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센터장

**유상건** 유정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전경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사업국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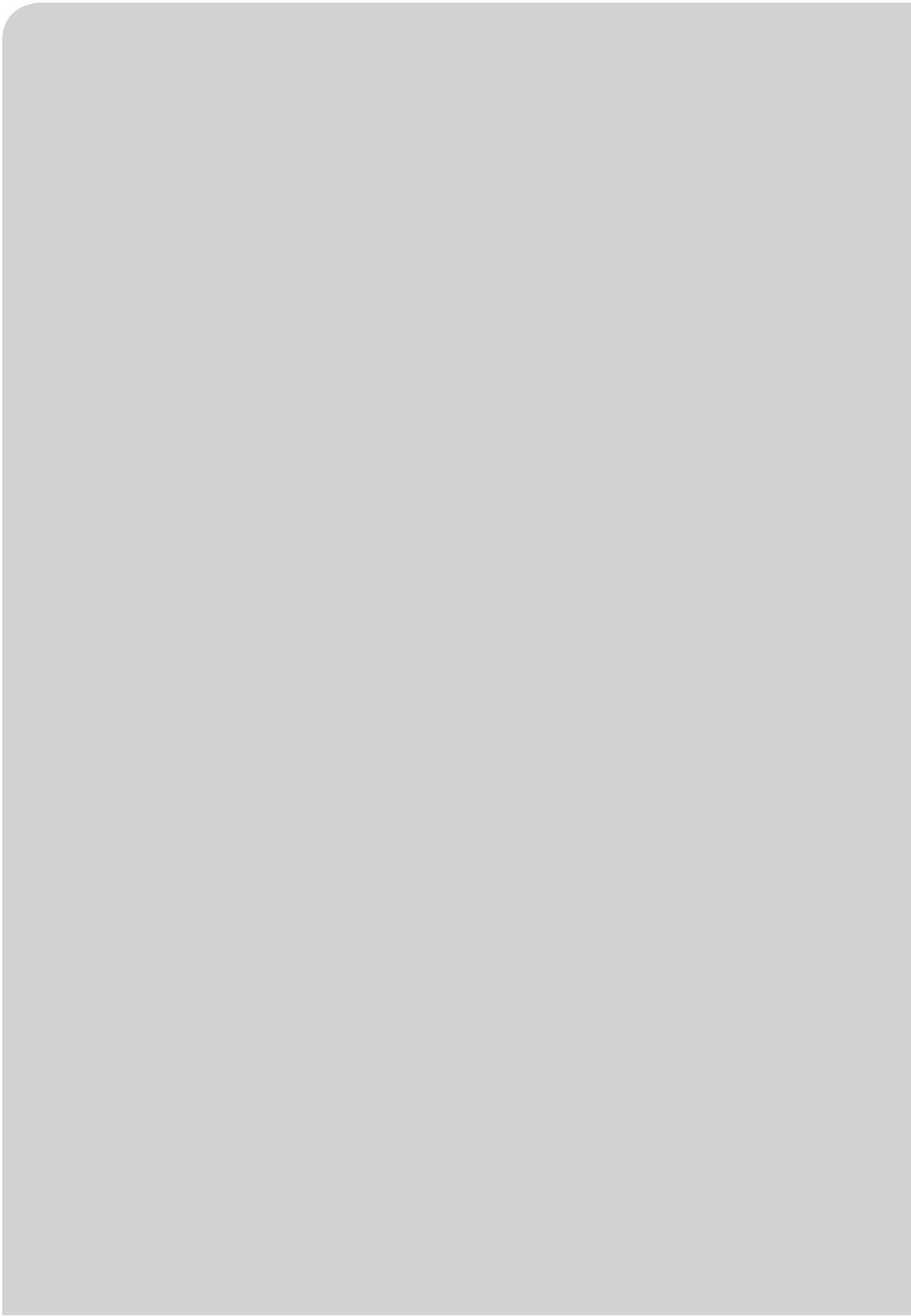
**정혜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  
처벌법  
2법 대응매뉴얼



# CONTENTS

I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5
II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대응	33
III	직장어린이집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47
IV	FAQ	87



# I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I.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1. 중대재해처벌법

#### 1. 입법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과 가슴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강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 개념

### 1) 중대재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2)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3)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4)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가 목적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에 대한 대가 목적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5)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 등과 구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자연인인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6)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형식상 직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 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3.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 1)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시행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시기는 원칙적으로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 1. 2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사업장 변경이나 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주가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 해당일부터 적용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 → 50명 이상으로 증가 : 50명 이상이 된 때 부터 적용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 50명 미만으로 감소 :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50명 미만인 경우 제6조의 적용 대상 아님

#### 부칙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 1)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 처벌(형사)

#### 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처벌을 받고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나.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대 시민재해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처벌(형사)**

**가. 중대산업재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나. 중대시민재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3) 손해배상책임(민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4)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시행일 **7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여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 ⑨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2. 중대산업재해

### 1. 의의

#### 1)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는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자 발생의 경우 그 원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에 의한 사망 외에도 질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고,** 화재·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엄격한 형사제재를 전제로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은 곤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개선시키기 위한 행위이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는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환경으로서 기온이나 기압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중금속이나 유기용제 등에 중독 되는 경우, 바이러스 등 생물체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설비 등의 외부적 상황에 노출되거나, 작업이나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대상

### 1)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를 대상으로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하여야합니다.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을 확보 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선·시정 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의미합니다.

####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관련 서면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4) 처벌

상기한 것처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을 과합니다.

구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형 확정후 5년이내 재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3. 중대시민재해

### 1. 의의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2.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①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료 또는 제조물에 관련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 가. 원료·제조물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시행령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선·시정 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의미합니다.

####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 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시행령 제10조 제1호부터 제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 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 보건의에 관한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선·시정 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의미합니다.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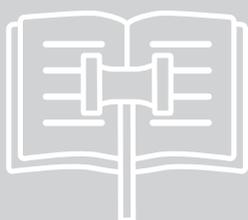
-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처벌

구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II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대응



## II.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대응

### 핵심 체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가운데 재해 규모가 큰 재해(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정부책임자 등(이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예정함으로써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 기존(중간, 현장) 안전관리자(예, 어린이집 원장, 기업 등 안전관리담당자)의 신규 의무 부과와 이에 대한 처벌이 주된 대상이 아니라,
  -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과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중간,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주로 책임을 묻던 것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1. 중대재해 유형별 의미와 직장어린이집 대응의 필요성

### 1. 직장어린이집 관련 중대산업재해

#### 1)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규모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단,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024.1.27.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도급, 위탁 등 업무를 맡기는 ‘법인이나 기관’(‘위탁자’) 전체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직장어린이집의 수탁운영<sup>1)</sup> 시 해당 사업장 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제3자의 종사자, 법 제5조)의 규모가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위탁(위임)과 수탁(수임):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로써, 어린이집 운영 등을 맡긴 법인이나 기관을 위탁자(위임자)라고 하고, 위탁(위임)을 받은 자를 수탁자(수임자)라 한다.

### 상시근로자 기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의미
-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포함)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포함**
-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 **파견 근로자**의 경우 포함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으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으로 봄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여부**는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동일 장소’에 소재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있으나(’22년 보육사업안내, 9쪽),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상시근로자를 판단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함
- ※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수급기관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도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 2)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지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 ’20년, 23쪽)에서는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 개선·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 소방청 해설서(중대재해처벌법 해설, ’21년, 13쪽)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①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②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③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로 봄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도급인(위탁자)이 해당 장소에 대해 도급인 소유의 회사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거나 외부장소에 비용을 부담하고(수탁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장소나 시설, 설비에 대한 통제(유해·위험 요소 인지와 이의 관리·개선 등)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수탁자)이 운영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한 곳에서 운영하거나 제3자로부터 자신(수급인)의 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제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체계 상 실제 재해 발생 시 사례에서 기업(위탁자)의 책임이 면제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직장어린이집에서 중대산업재해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개념을 전제하여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의 보상을 목적으로하고 그 인정범위가 더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개념

##### 제2조(정의) (생략)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b>치료</b>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u>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 3개월 이상 <b>요양</b>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ul>

여기에서 ‘치료’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개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증상이 고정된 이후는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다만, 입원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통원치료도 포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기준)됩니다. ‘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 따라 ‘치료 이전에 시행되는 진찰과 검사는 물론 치료 이후 재활치료까지 포함하여 피재자(재해 피해를 입은 자)가 치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른 24개 유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의 환경 상 오염된 냉각수에 의한 ‘레지오넬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사망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 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 작업수행의 방식이나 업무 편승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사망,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은 사안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직장어린이집에서의 중대산업재해 사례

##### 사례 1

여름철 폭풍 이후 어린이집 해당 지붕 부분이 파손된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일부가 떨어져 보육교사(종사자)가 다쳤다.

##### ■ 사례해설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이 도급인(위탁자)에게 있다면, 해당 장소에 대한 사업(직원 자녀의 보육 관련) 위탁운영을 수탁시설(직장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의 경우 시설 등의 직접적인 파손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바로 결부되지 않으나, 관리자의 위험(유해) 요인 인지와 이에 대한 방치(의무위반)가 재해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면(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재해의 피해자에 따라, 종사자가 다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지나가는 행인(시민)이나 이용자(보육아동)가 다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음

##### 사례 2

전라남도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학부모의 차량에 원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뒤로 밀린 차량에 끌려가 어린이집 출입구 철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현상에서 사망하였다.

##### ■ 사례해설

본 사례는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채해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례 3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보육교사가 다른 보육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사망 직전 1주일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 20분을 근무하는 등 업무의 과중에 시달렸고, 야간근무 중 학부모와의 통화 직후 쓰러져 사망하였다.

#### ■ 사례해설

본 사례에 대하여 서울 행정법원은 과도한 업무나 학부모와의 언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출혈이 발병,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어린이집에서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2. 중대시민재해

### 1) 중대시민재해의 의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대산업재해와의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사이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b>2개월</b> 이상 치료가 필요한 <b>부상자가 10명</b>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b>3개월</b> 이상 치료가 필요한 <b>질병자가 10명</b> 이상 발생

## 2) 직장어린이집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적용여부

### 가. 어린이집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는 「영유아보호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이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연 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등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위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1.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중대시민재해와 도급(위탁)운영과의 관계

경영책임자 등은 직장어린이집(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도급인(위탁체)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 3) 직장어린이집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종류

직장어린이집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주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관리상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여부와 상관없이(즉, 어린이집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제조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중대시민재해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의미하며, 식품 등을 제조(가공 포함)하여 위생 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집(연면적 제한 없음)이 해당됩니다. 다만, 외부 업체에 의해 식품 등을 사오거나 공급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 보관 등 관리상의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관련

\*소방청 해설서 참조

- ‘공중이용시설’의 주요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 따라서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또한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 또는 기업(법인)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보육교사의 부주의가 결부되지 않은 보육아동 장난으로 인한 부딪침 사고, 낙상 등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등

#### 4) 직장어린이집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사례

##### 사례 1

여름철 폭풍으로 느슨해진 어린이집의 옥외 간판을 방치하다가 어느날 지난가던 행인이 다쳤다.

##### ■ 사례해설

어린이집 시설의 결함이 아닌 공작물 사고(간판 등 시설의 부착물 등)로 인해 보육아동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사망한 경우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작물에 관한 관리 부주의에 대한 별도의 처벌 대상(업무상 과실치사 등) 및 손해배상(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재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증상자는 총 118명이며 69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 ■ 사례해설

어린이집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물(현장학습을 위한 간식 등)이었다면 어린이집의 관리 상의 부주의가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중이용시설(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로서 어린이집 주체인지, 음식물을 제조한 주체(연면적 상관없이 전 어린이집)로서의 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3

방화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 시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비상대피로 상 비상구가 잠겨 있어 이를 열지 못해 보육아동의 피해가 커졌다.

#### ■ 사례해설

화재의 원인이 시설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위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이 책임질 사안이 아닐 것이나, 화재원인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소화설비 또는 경보설비의 작동 불능 및/또는 피난구조설비 등의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거나(정상적으로 작동/관리되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어린이집의 책임 영역에 해당되는 '중대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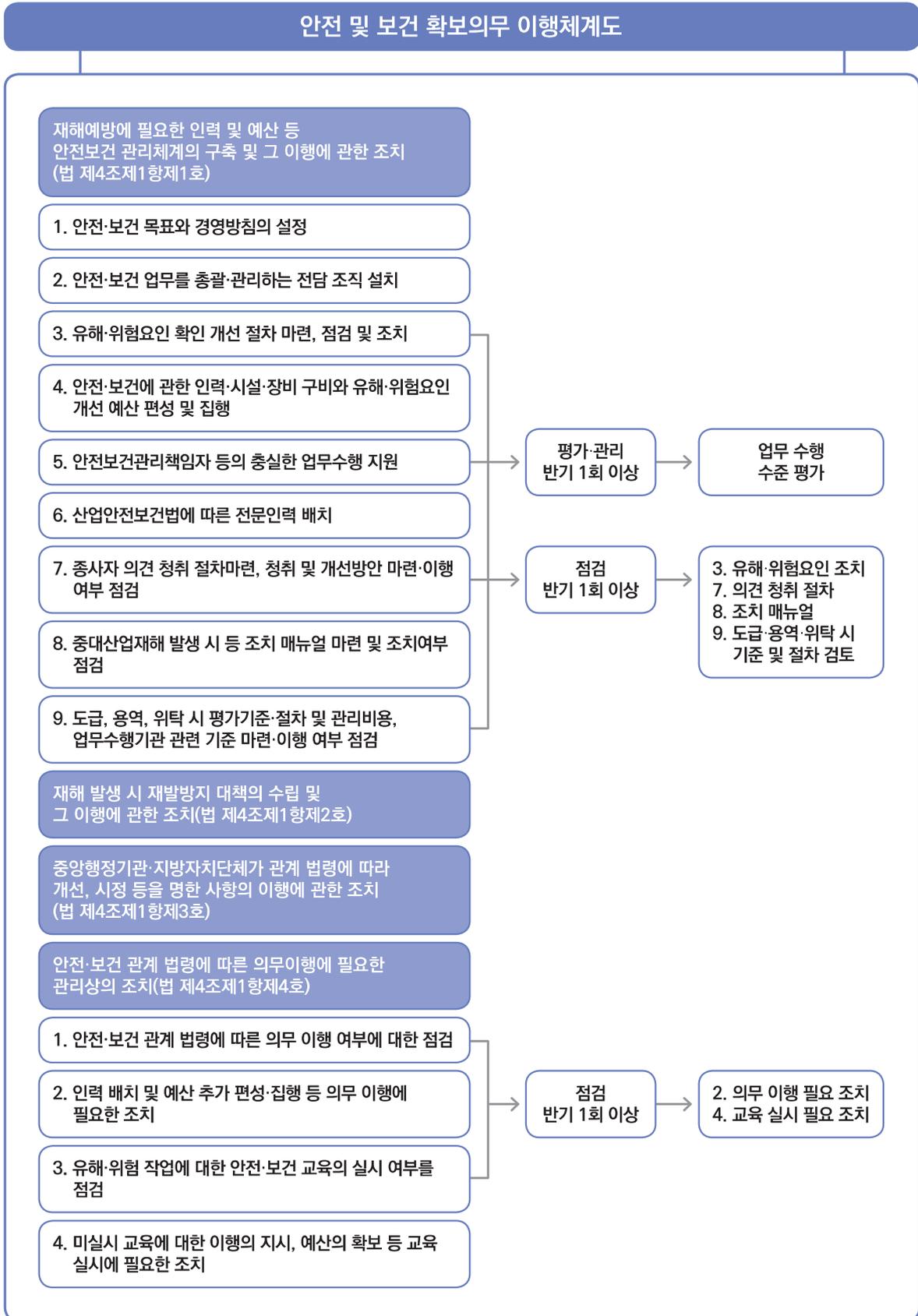
어린이집은 제조물 관련 및 공중이용시설 관련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2.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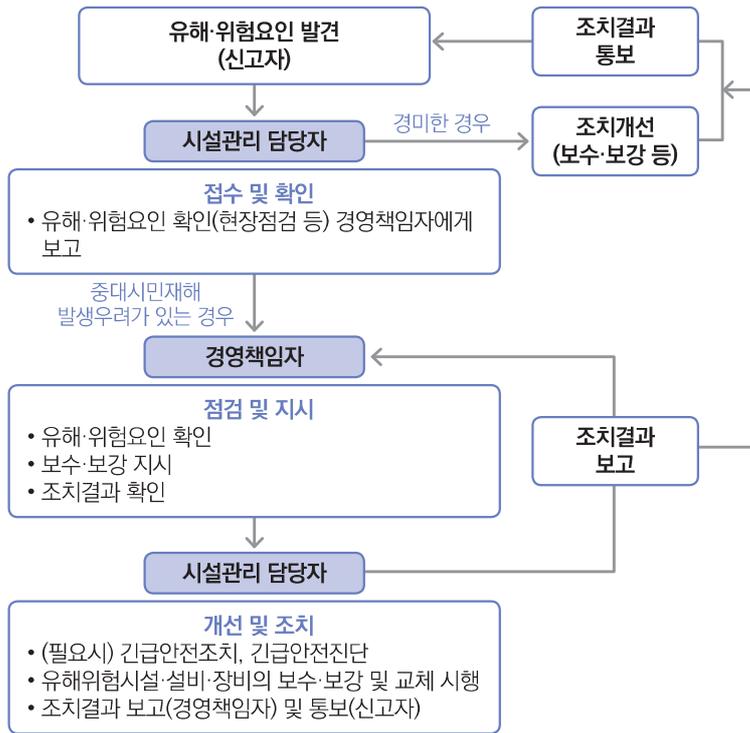
###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방안

<b>1</b>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제1호)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b>이행방안</b>  상시근로자 수가 <b>500명 이상</b> 인 경우 '전담조직' 설치 필요(구성원은 2명 이상, 부서장 및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  모든 사업장이 <b>반기 1회</b> 이상 점검·조치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함)  업무수행(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력 배치 * 대규모 공사현장 등		
	⑦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 건의함 또는 내부 전산망 내 건의게시판을 마련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b>의견 수렴</b> → <b>개선 조치</b> 필요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위험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매뉴얼 주요 내용 :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구조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⑨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등(체크리스트 참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자기 회사의 종사자는 물론 수급인 및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
<b>2</b> 재해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업무분장상 보고체계 확정(법 제4조제1항제2호)	보고체계 구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시 (문서화)와 실행		
<b>3</b> 관계법령상(예, 영유아보육법) 개선·시정 명령(행정처분*)을 명할 경우 이행할 의무(법 제4조제1항제3호)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기록 및 보고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 행정지도, 권고, 조언 등은 미포함		
<b>4</b>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배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법 제4조 제1항제4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점검 *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영유아보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기준(소방청 해설서 기준)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 공중이용시설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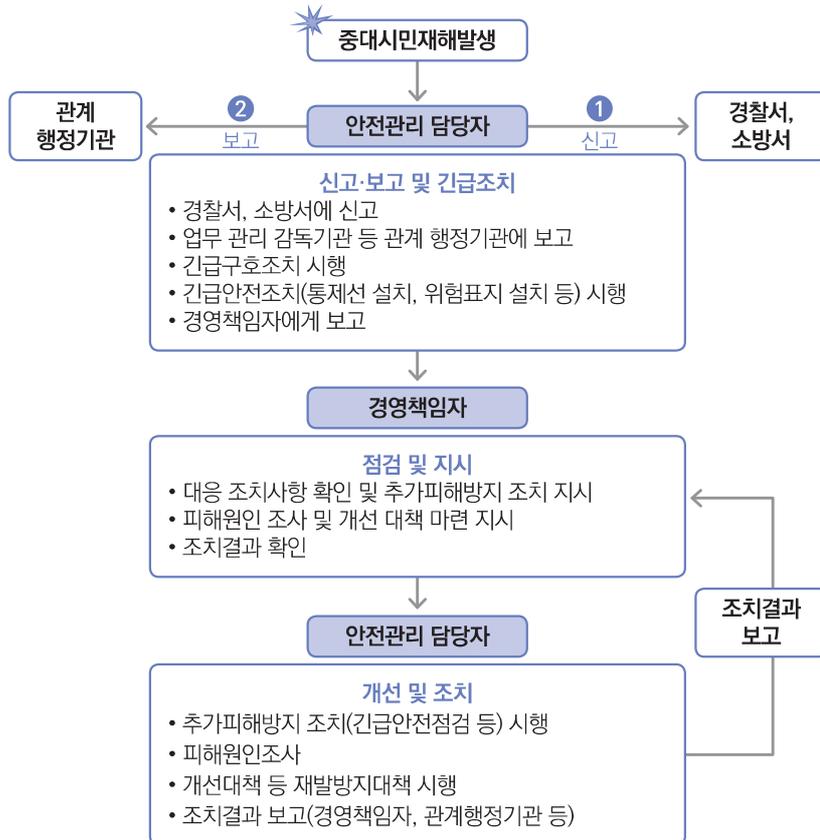
##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체계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절차 예시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절차 예시



# III

## 직장어린이집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Ⅲ. 직장어린이집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은 시설관리, 전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 보건 상의 관리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소방, 시설관리, 전기업무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시기에 적절한 다양한 방법의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관련하여 보육사업안내, 소방청,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수정 첨부하였으며, 보육사업안내 체크리스트는 점검항목별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점검표는 예시이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도록 선택·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위생, 안전 점검표

어린이집 위생관리 점검표

▶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표의 예시입니다. 기준에 맞춰 위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자	담당자	결재자

점검일:           년           월           일

구분	점검항목	기록		부적합 시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1. 개인 위생 관리	복장 관리	•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착용 / 장신구 미착용 여부 확인			
	건강 상태	• 식품취급자(조리종사자 포함) 건강상태 확인 - 설사,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등 감염성질환			
	건강 검진	• 지자체의 기준에 맞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가?			
2. 식재료 검수 및 보관관리	검수 일지	• 검수 실시 및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유통 기한	• 식재료의 유통기한 및 선입·선출 관리			
	보관	• 식품, 비식품(세척제, 소독제 등)을 구분 보관			
	냉장 냉동고 관리	• 냉장고·냉동고의 적절한 온도 관리 (단, 자체기록지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하며, 별도 일일점검/기록지가 있으면 대체 가능)  • 식재료의 보존, 유통 및 원료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	냉장고 ℃  냉동고 ℃		

구분	점검항목		기록		부적합 시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3. 전처리 및 조리관리	세척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료(채소·과일) 세척·소독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 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1종 세척제 사용 및 충분한 헹굼 여부</li> </ul>			
	조리 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돈까스, 만두, 떡갈비 등 분쇄육, 생선 등)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 완료시점 품온(식품의 중심온도)을 측정하고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류, 냉동식품(생선, 돈까스, 떡갈비 등 분쇄육), 냉동만두 중심온도: 75℃이상</li> <li>- 어류 중심온도: 85℃이상</li> </ul> </li> </ul>	메뉴명: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동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해동한 식품은 즉시 사용/ 해동식품 재냉동 금지</li> </ul>			
	구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도마(어류·육류·채소류, 완제품 등)는 용도별 구분 사용</li> </ul>			
4. 배식 관리	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식용 보관용기는 세척·소독·건조된 것을 사용하여 조리된 음식은 뚜껑 등을 덮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li> </ul>			
	배식 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식대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됨(부득이하게 보관이 필요한 경우 폐기용 표시하여 보관)</li> </ul>			
	보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간식 등 가공품 포함) 각각의 용기(또는 1회용 멸균팩)에 1인 분량씩 담아 -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단,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까지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 가능)</li> </ul>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			
		석식			
5. 시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 소독시설, 환기시설, 염소자동주입기(지하수 사용시) 정상 작동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 및 배수구 관리 여부</li> </ul>			

※ 기록방법: 적합○, 미흡△, 부적합X, 해당사항 없을 경우 - 표기, 부적합 시 조치사항 기록

※ 출처: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부록(별표2)위생관리점검표

##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 **일별 점검표**

① **급식 분야**

점검자	담당자	결재자

점검일:           년           월           주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위생 관리 및 식재료 관리	-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하고, 배식 시에는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하고 있다.							
	-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있다.							
	-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용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고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정기적인 방역 소독필증 보관).							
	- 식재료의 입고 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							
작업 관리	-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하고 있다.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쇠고기 등 16종)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그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을 하고 있다.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체크	- 조리장 바닥과 배수로에 물고임 및 냄새 역류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 후드, 환풍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기관리	-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콘센트에 먼지 등 이물질은 없는가?							
시설설비관리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라디에이터, 난로, 히터 등의 보호덮개, 라이터, 성냥, 양초, 폭죽 등이 방치된 것이 있는지, 가스 중간밸브 잠김, 화기시설 주변의 가연물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품은 즉시 제거한다. 보호덮개가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화학용품 및약품, 살충제, 세제, 기타 위험한약품 등이 방치되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특히 약품의 경우 조리실에 있으면 음식물로 들어갈 수 있기에 주의를 더 요한다.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4조							
확인내용	- 가스밸브와 가스중간밸브 잠금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가스와 가스중간밸브 잠금 상태, 가스누설 탐지기의 상태·위치 등을 확인하여 가스누출을 예방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는 중간밸브를 설치 해야 한다. 가스밸브 주위의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가스누설탐지기의 위치(LNG: 천장에서 30cm, LPG: 바닥에서 30cm 이내)를 점검하고 손상여부, 전원의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상이 있을시 전문업체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정기검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연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점검을 받는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 외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							

※ ‘\*\*’가 표시된 점검사항은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의 경우 권고사항임

② 안전 분야

점검자	담당자	결재자

점검일:           년       월       주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실외환경	체 크	- 어린이집 보호벽 및 주변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실외놀이 공간 주변의 돌, 유리조각, 요철, 녹이 손 부분, 벗겨진 페인트, 돌출된 모서리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가 없는가?							
	전 기 안 전	- 실외시설의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콘센트에 먼지 등 이물질은 없는가?							
확 인 내 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어린이집 보호벽 및 어린이집 주변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담, 울타리, 창살, 가스 혹은 난방기 등의 계량기,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 비상미끄럼틀, 외부 차양 등 설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즉시 안전하게 제거·수리 및 관리한다.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가 없는가? (조치사항) 오물 및 물 웅덩이는 전염성 질환을 야기시키는 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제거하고, 물 웅덩이는 물 제거 후 웅덩이를 관리하여 영유아가 넘어질 수 있음을 방지한다.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체 크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은 없는가?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대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대 등을 사용하기에 양호한가?							
	- 보육용품이나 비품 유리창 등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는가?							
	- 전기포트, 뜨거운 차, 글루건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 세면대, 정수기 등 뜨거운 온수가 나오는 곳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							
전 기 안 전	-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콘센트에 먼지 등 이물질은 없는가?							
실 내 환 경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문과 창문의 안전상태 확인 및 창문 등에 가까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이 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한다.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조치사항) 화장실, 계단, 실내 보육실 등에 미끄러운 곳, 물이 고인 곳을 확인한다. 미끄럼방지 시트 또는 타일을 부착하거나 물기가 많으면 물기를 제거한다. 또한, 바닥의 단차가 있는 경우 영유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바닥에는 단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대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대 등을 사용하기에 양호한가? (조치사항) 유사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방치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한다.							
	- 전기포트, 뜨거운 차, 글루건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전기포트나 전기밥솥 등은 조리실에 비치하며, 영유아가 조리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문을 잠궈둔다. 글루건, 뜨거운 차 등은 영유아가 없는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세면대, 정수기 등 뜨거운 온수가 나오는 곳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세면대나 정수기 등에 온수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온수 잠금 설정을 한다.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놀이감 및 놀이기구	체크							
		- 망가져 날카롭고 위험한 것 또는 부품이 빠지거나 작은 볼트 등이 빠진 것은 없는가?						
		- 유해 색소가 칠해진 놀잇감은 없는가?						
		- 영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 놀잇감 및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영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조치사항) 놀잇감의 크기가 영유아의 입, 코, 귀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3.5cm 이상의 놀잇감을 준비한다. - 놀잇감 및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놀잇감이 영유아가 수납하기에 적당한지, 무거운 놀잇감이 높은 곳에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유아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수납위치를 바꾸고, 무겁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놀잇감은 즉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다. 방치된 놀잇감은 영유아들이 올라가 추락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화장실·세면대	체크							
	- 화장실 내 세제나 락스 등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전기·화기·위험물		-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가스밸브와 가스중간밸브 잠금은 양호한가?						

③ 차량 분야

점검자	담당자	결재자

점검일:           년           월           주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운행 전 점검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의 비치여부 및 비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하고 전·후방 사각지대에 영유아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행 중 점검	- 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육교사 등)이 탑승하는가?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가 있는가?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 후 점검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한다.							
추가 점검 사항	- 어린이 하차 확인 벨은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설치되어 있는가?							
	- 운행 후 어린이 하차 확인 벨을 눌러 확인하였는가?							
	- 버스 승차 인원 중 결석 인원을 어린이집에 보고하였는가?							
	- 동승교직원의 안전벨트 착용은 차량이 움직이기 이전에 장착하고, 차량이 완벽히 멈추었을 때 풀렀는가?							
	- 하차 시 어린이집 현관 입구에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차량 하차 후 모든 영유아의 안전 등원을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하였는가?							
	- 영유아 몸무게에 맞는 안전 장구를 착용을 확인하였는가?							
	- 지정 속도에 적합한 운행을 하였는가? - 영유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지턱의 속도, 앞차와의 적정 거리를 지켰는가?							

▶ 월별 점검표

점검자	담당자	결재자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안전관리	체 크	-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 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확인 내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조치사항) 원장의 안전관리 책임성,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원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 전문성(방화관리자 자격 등)확보 하도록 하고, 교사가 안전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체계가 수립되도록 한다. -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조치사항) 비상시 소방서·병원·경찰서 등의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전화기 옆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속적으로 소방서, 병원의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 연락망의 전화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한다.	
실외환경	체 크	- 어린이집 주변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 위험한 적치물,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확인 내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어린이집 주변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어린이집 50m 이내에 고압선, 전선, 가로등 등 감전 위험을 확인한다. 확인물 발견 시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 위험한 적치물,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어린이집 주변 50m 이내에 위험한 물건·물품(방치된 자동차 생활쓰레기 적치,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 맨홀, 파인 곳, 공사장 등)이 확인되면 지방자치 단체(주민자치센터 포함)에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실내환경	체 크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확인 내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건축설비의 전기, 난방, 조명, 급배수 등의 설비물의 고정 상태와 벽 천장 등에 고정된 물품과 장식물 등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수리 필요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조치사항) 창문의 깨짐, 창문 테두리의 실리콘 상태, 방충망의 노화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여 즉시 조치한다.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현관 · 통로 · 계단 · 비상구	체 크	- 출입문, 현관문 등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계단, 통로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있는가? -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확 인 내 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출입문, 현관문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조치사항) 보안을 위한 잠김 문이나 인터폰·초인종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후 응급 조치와 필요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또한, 출입문과 현관문의 손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 고무 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한다. -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안전손잡이, 적치물, 난간의 간격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응급조치 후 필요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 계단의 단 높이는 16cm이하이며 단의 높이가 일정해야 하며, 단 너비는 26cm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난간의 높이는 110cm이상, 난간살의 간격은 10cm이하로 설치한다(출처: 안전매뉴얼연구. 중앙보육정보센터 2008).		
화장실 · 세면대	체 크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확 인 내 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조치사항) 방수용 콘센트 및 물에 의한 전기 위험 여부를 확인한다. 콘센트는 방수용으로 교체하고, 물에 젖거나 고인 물(욕조 등)에 추락이 가능한 물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또는 제거한다.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조치사항) 고정상태 확인 시 나사 풀림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실내외 놀이 기구 및 공간	체 크	- 모든 놀이기구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놀이 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영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인가?		
		- 기초대, 지지대 등 매설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 모든 놀이기구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의 충격흡수재 성능은 양호한가?		
		- 보수가 필요한 놀잇감 및 놀이기구가 방치되어 있는가?		
		- 놀이기구의 높이가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안전 검사(KC 인증 등)를 필한 제품인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실내외 놀이기구 및 공간	확인 내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모든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놀이기구의 고정상태, 매설된 지지대의 노출, 윤활유 보충 등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 후 필요시 관련업체에 의뢰한다. - 놀이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영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인가? (조치사항) 집합놀이기구 등의 틈새나 간격의 너비 확인 및 노후로 인한 영유아 신체의 빠짐 및 끼임 등을 확인 한다(손가락: 8mm이하·25mm이상, 발: 30mm 이하, 머리: 9cm이하·23cm이상). 안전관리 필요시에는 1차 안전조치로 접근금지 표시 및 전문업체 수리 의뢰한다. - 모든 놀이기구의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에 충격흡수체의 성능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 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5-30cm 이상의 모래, 우레탄 바닥, 매트 등). 충격흡수제 사용시 마모되어 구멍이 나거나 끝 부분이 말림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안전조치 후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 놀이기구의 높이가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조치사항) 놀이기구의 구입 시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신체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참고로 놀이 기구의 높이는 2.5m 이하로 설치한다. ※ 출처: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소방방재청 2005	
		체크	- 전선, 콘센트, 플러그 등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한 개의 콘센트에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손된 것은 없는가?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전기 가스 위험물 안전 관리	확인 내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라디에이터, 난로, 히터 등의 보호덮개, 라이터, 성냥, 양초, 폭죽 등이 방치된 것이 있는지, 가스 중간밸브 잠김, 화기시설 주변의 가연물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품은 즉시 제거한다. 보호덮개가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화학용품 및 약품, 살충제, 세제, 기타 위험한 약품 등이 방치되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특히 약품의 경우 보육실 영유아용 책상 위에 놓여져 영유아들이 만지거나 먹을 수 있기에 주의를 더 요한다.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4조 - 가스밸브와 가스중간밸브 잠금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가스와 가스중간밸브 잠금 상태, 가스누설 탐지기의 상태·위치 등을 확인하여 가스누출을 예방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는 중간밸브를 설치 해야 한다. 가스밸브 주위의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가스누설탐지기의 위치(LNG: 천장에서 30cm, LPG: 바닥에서 30cm 이내)를 점검하고 손상여부, 전원의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상이 있을시 전문업체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정기검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연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점검을 받는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 외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소방 시설 관리	체 크	- 대피를 위한 대피도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의 작동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이 양호한가?		
	확 인 내 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의 관리 상태는 적합한가? (조치사항) 소화기의 비치 위치, 압력 등의 적합한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소화기는 연면적 33㎡ 이상에 1대 이상을 비치한다. 또한, 공간의 제약성 등을 확인 후 필요시 추가로 비치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되 영유아 보행시 충돌 방지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놓는다. 소화기는 압력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방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옥외소화전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소화전 함의 내용물을 확인(관창 1, 호스 2), 방수시 수평거리 17m 도달 시 정상이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비상 대피 시설 관리	체 크	-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확 인 내 용	※ 내용 확인 후 체크합니다.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의 관리 상태는 적합한가? (조치사항) 소화기의 비치 위치, 압력 등의 적합한 관리상태 확인한다. 소화기는 연면적 33㎡ 이상에 1대 이상을 비치한다. 또한, 공간의 제약성 등을 확인 후 필요시 추가로 비치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되 영유아 보행시 충돌 방지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놓는다. 소화기는 압력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방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비상 대피 시설 관리	확인 내용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옥외소화전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소화전 함의 내용물을 확인 (관창 1, 호스 2), 방수시 수평거리 17m 도달 시 정상이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정상 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	

※ 출처: 2022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안전 점검체크리스트

연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인결과
		상(하)반기
1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2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3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위탁 포함)	
4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	
7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8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9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시 같음 가능	
10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와 같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였음

##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공중이용시설의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는 안전계획서 작성 지도 시 이 해설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 등도 이 계획서를 참조하되,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차기년도 안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경영책임자 등: 홍길동(실명)]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 ■ 일반개요

구 분	일반 현황				
① 명 칭					
② 도로명주소					
③ 연 락 처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 책임자 _____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_____		
④ 규모/구조	<input type="checkbox"/> 건축면적 _____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연면적 _____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위치 지상 _____ 층 / 지하 _____ 층				
	<input type="checkbox"/> 건물구조 _____				
	<input type="checkbox"/> 용 도 _____				
⑤ 인원현황	<input type="checkbox"/> 거주인원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근무인원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고 령 자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_____ 명				
안전·보건관리	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 책임자	
		성명	지정일자	성명	지정일자
		☎ (유선) _____		(휴대전화) _____	
현황	⑦ 업무위탁	<input type="checkbox"/> 대행업체: _____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_____ <input type="checkbox"/> 면허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대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를 대행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			
	⑧ 보험가입 (화재 등)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⑨ 안전·보건 예산 (단위: 천원)	점검비용	보수·보강 비용		안전·보건 인력 (단위: 명)	수행인력 (기존종사자 중에서 지정 가능)
	0000천원	0000천원			
⑩ 안전·보건 점검	내용			일정(매분기)	개선사항 조치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p>① 명칭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법인명(단체명)</p>	<p>① 명칭 일반과세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명(단체명)”을 기재합니다.</p>
<p>② 도로명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p>	<p>②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합니다.(아래 예시) - (단독건물) 서울특별시 ○○구 00대로00길00(00동) -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구 00, 00호(00로)</p>
<p>③ 연락처 비상시 연락가능한 연락처</p>	<p>③ 연락처 사무실: 02-0000-0000 / 일반전화 안전·보건책임자: 010-0000-0000 / 휴대전화</p>
<p>④ 규모 건축물대장의 일반현황</p>	<p>④ 규모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대장 참조 기재 - 위치: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는 영장은 건축물 대장의 층수 기재(예시. 지하00층/ 지상00층), 건축물의 일부층에 위치할 경우 건축물 대장의 층수 및 영업장 위치 층 표기(예시. 지하00층/ 지상00층 중 00층에 위치) - 건물구조: 건축물 현황의 구조기재 (예시. 철근콘크리트 구조) - 용도: 건축물 현황의 용도 기재 (예시. 휴게음식점)</p>
<p>⑤ 인원현황 해당 영업장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p>	<p>⑤ 인원현황 해당 영업장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거주인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해당 영업장에서 숙식하는 인원 - 근무인원: 영업장 운영을 위해 근로하는 인원 (국민연금 가입대상 뿐만아니라 임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 모두 포함하여 기재) - 거주 및 근무인원 중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 재난 약자의 수를 각각 기재</p>
<p>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p>	<p>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을 기재합니다. - 안전·보건 책임자: 다중이용업소법(영업주), 소방 시설법(소방안전관리자), 초고층재난관리법 (총괄재난관리자)등 개별 영업·시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재 ※ 별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인원을 지정 - 안전·보건 책임보조자: “안전·보건 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재</p>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p>⑦ <b>업무위탁</b>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위탁 현황</p>	<p>⑦ <b>업무위탁</b>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대행한 경우 대행업체의 현황과 계약 내역을 기재 합니다.</p>
<p>⑧ <b>보험가입</b> 안전·보건 관련 보험가입 현황</p>	<p>⑧ <b>보험가입</b> 안전·보건 관련 보험가입 현황을 기재합니다. - 예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등</p>
<p>⑨ <b>안전·보건예산</b> 안전·보건에 투입되는 예산현황</p>	<p>⑨ <b>안전·보건예산</b>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기재합니다. (예산 산정기준: 1년)</p>
<p>⑩ <b>안전·보건인력</b> 안전·보건에 투입되는 인력</p>	<p>⑩ <b>안전·보건인력</b> “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보조자)를 포함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기재합니다.</p>
<p>⑪ <b>안전·보건점검</b>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점검현황 등</p>	<p>⑪ <b>안전·보건점검</b>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해당 영업·시설 관련 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기재합니다.</p>

■ 안전·보건관리

① 구 분	② 관리항목	③ 관리주기				④ 관리계획
		주	월	분기	연	
점 검	안전시설 등 점검		✓			안전시설 등 육안점검
교 육	소방안전교육			✓		자체안전교육 실시
훈 련	자체소방훈련				✓	합동소방훈련 실시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p>① 구분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교육, 훈련 및 기타 안전·보건 관리 계획</p>	<p>① 구분 업무성격에 따라 “점검, 교육”, “훈련”,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p>
<p>② 관리항목 점검, 교육, 훈련 및 기타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세부 관리항목</p>	<p>② 관리항목 법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세부 관리항목을 기재합니다. (아래예시) - 점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 - 교육: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 훈련: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훈련 등</p>
<p>③ 관리주기 법령에 따른 법정 실시 주기 또는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수행주기</p>	<p>③ 관리주기 법령에 따른 법정 실시주기 또는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수행주기를 선택합니다. (아래예시) - 점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분기) - 교육: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연) - 훈련: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훈련 등(연)</p>
<p>④ 관리계획 관리항목의 세부 실시계획</p>	<p>④ 관리계획 관리항목의 세부 실행계획을 간략히 작성</p>

■ 중대사고 예방 및 홍보

홍보방법	계획	홍보방법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주간(기간)운영		<input type="checkbox"/> 홍보물(리플렛, 스티커)배부	
<input type="checkbox"/> 포스터, 표어 전시		<input type="checkbox"/> 현수막, 배너 설치	
<input type="checkbox"/> 영상물 상영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App, SNS활용	
<input type="checkbox"/> 체험시설(체험관)견학		<input type="checkbox"/> 구내 캠페인 방송	
<input type="checkbox"/> 문서, 이메일 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고			

참고) 작성요령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고 예방에 관한 홍보방법 및 계획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홍보방법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li> <li>② 선택한 홍보 실시계획을 간략히 기재                                      &lt;예시&gt;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보주간(기간) 운영 / '22. 11월~12월, 전 직원 전파</li> </ul> </li> </ul>

■ 화기(火氣) 등 취급의 감독(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안전·보건감시인

참고) 작성요령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기(火氣)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작업 시 안전·보건 감시인을 지정하고 사전에 허가받은 시간·장소에서 작업 실시하고, 허가사항을 기록합니다.</li> </ul>

■ 초기대응대 구성(해당 영업·시설 등의 종사자로 구성)

① 조직개요					
편성	① 초기 대응대	<input type="checkbox"/> 편성인원: 대장 _____명, 부대장 _____명, 대원 _____명 <input type="checkbox"/> 조직구성: <input type="checkbox"/> 지휘통제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현장대응팀( _____명)			
	② 초기 대응체계	<input type="checkbox"/> 편성인원: _____명, A조( _____명) B조( _____명) C조( _____명)			
③ 운영시간		<input type="checkbox"/> 주간편성( ~ 시) <input type="checkbox"/> 야간편성( ~ 시) <input type="checkbox"/> 휴일(공휴일)			
② ④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분	소속	성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장	인사팀	홍길동	대응총괄		
부대장					
지휘반	⑤ 지휘 통제	관리팀	김철수	사고발생시 상황 전파	
대응반	⑥ 현장 대응	시설팀	김영희	시설 긴급보수	
*각 구역별로 2인 이상을 선정					
⑦ 초기 대응체계	구분	A조( )	B조( )	C조( )	D조( )
		( ~ 시)	( ~ 시)	( ~ 시)	( ~ 시)
*비고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p>① <b>초기대응대</b> 최초 재난발생시 현황 파악, 신고 및 거주자·이용자 등에게 비상전파와 피난 유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p>	<p>① <b>초기대응대</b> (편성인원) 대장과 부대장, 대원을 구성하되 조별 2인 이상 편성 (조직구성) 지휘통제팀: 건축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 현장대응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비상전파, 유도대피, 안전조치 등)</p>
<p>② <b>초기대응체계</b>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내 근무자 및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운영</p>	<p>② <b>초기대응체계</b> 화재, 지진, 테러 등에 따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편성(예: 지휘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통보연락팀, 구출구호팀 등으로 편성)</p>
<p>③ <b>운영시간</b> 항시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해 24시간 운영 체제로 구성</p>	<p>③ <b>운영시간</b> (주간편성) 근무시간 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 (야간편성) 근무시간 외 상주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되 비상 주의 경우는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되어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편성</p>
<p>④ <b>지휘통제</b> 조직구성원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안전한 재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통제함</p>	<p>④ <b>지휘통제</b> 비상전파를 통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p>
<p>⑤ <b>현장대응</b> 재난발생 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활동</p>	<p>⑤ <b>현장대응</b> 초기대응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p>
<p>⑥ <b>초기 대응체계</b>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각 팀별(소화팀, 피난유도팀 등)을 구성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응하는 체계</p>	<p>⑥ <b>초기 대응체계</b> 초기 대응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재난상황이 종료 완료될 때까지 현장 활동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시간대별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p>

■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분	대응방법 및 절차
① 비상경보	화재경보방식(□ 일제경보, □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전층( _____ ~ _____ 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지상층( _____ 층)+지하층 화재경보
② 상황전파	안전사고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초기대응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_____ / 기타: _____
사고신고	
비고. 종합방재실(수신반): _____ / 근무시간: _____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p>① 비상경보설비</p> <p>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에서는 신호를 인식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벨 또는 사이렌을 건물전체에 울려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p>  <p>▲ 발신기 누름버튼 스위치 위치</p>	<p>① 비상경보설비</p> <p>(일제경보방식) 어떠한 층에 화재발생시 층 구별없이 전층에 경보하는 방식으로 전체 층의 건물 층수를 기재</p> <p>(우선경보방식) 지하층을 제외한 5층 이상, 300mm<sup>2</sup>를 초과하는 대상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1층에서 화재발생시: 지하층 전층 + 지상1층 경보설비 작동</li> <li>- 지상1층에서 화재발생시: 지하층 전층 + 지상2층 경보설비 작동</li> <li>- 지상2층에서 화재발생시: 지상2층 + 지상3층 경보설비 작동</li> </ul>
<p>② 상황전파</p> <p>재난의 규모, 피해상황, 이용자 인원 등을 1차적으로 119에 신고하고, 재난상황에 대해 비상방송설비, 휴대용 확성기 등을 활용하여 피난자에게 피난방향이나 화재 상황을 알려 혼란 방지에 유의하여 피난 안내를 반복적으로 실시</p>	<p>② 상황전파</p> <p>(예시) 현재 9층 00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즉시 피난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시 유도등 또는 유도 표시를 따라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시되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p> <p>※ 육성 또는 비상방송설비 등을 활용해 상황 전파</p>

■ 공공기관 출동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관할기관	○○소방서 ○○119안전센터로부터 00km떨어짐 ○○경찰서 ○○지구대로부터 00km떨어짐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본 건물 옆에 있는 ○○빌딩과 00미터 이격되어 연소확대 우려는 없을것으로 보임	
집결지	본 건물의 정면 오른쪽 주차장에 소방차 등 집결 필요	
소방차 진입계획	초기대응대 인력 주 00명이 소방차 진입을 안내 등	

■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_\_\_\_\_년 제 \_\_\_\_\_차 ]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분	주요내용			
명 칭	화재 발생 시 이용객 피난대피 훈련			
일자/장소	일자:       년       월       일 / 장소:			
종 류	대상	<input type="checkbox"/> 초기대응대	<input type="checkbox"/> 재실자, 거주자	
	이론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실습	<input type="checkbox"/> ① 도상훈련	<input type="checkbox"/> ② 종합훈련	<input type="checkbox"/> ③ 부분(기능)훈련
④ 교육계획				
⑤ 훈련계획				
⑥ 평가계획	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자 (경영책임자 등)	(서명)
	평가방법			

비고.

**참고) 작성요령**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도 포함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용어설명 및 작성방법	
<p>① <b>도상훈련</b> 재난이나 유사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실제훈련을 하지 않고 재난상황을 가상하여 하는 훈련</p>	<p>④ <b>교육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예시)</b> -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 재난의 신고 및 전파 등의 방법 -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 총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유도방법 - 구조 및 응급구호 방법 - 현장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2차 피해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외부기간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p>
<p>② <b>종합훈련</b> 재난유형을 부여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여 실제상황처럼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p>	<p>⑤ <b>훈련계획에 포함할 사항(예시)</b> - 화재시나리오 상정 - 발생장소 확인 - 소방기관 통보 - 건물내의 전파 - 초기 진화 - 피난유도 및 종합강평</p>
<p>③ <b>부분(기능)훈련</b> 대형재난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의 일부분만 집중하여 하는 훈련 예) 피난대피훈련, 응급처치교육, 화재 초기 진압교육 등</p>	<p>⑥ <b>평가계획</b> 경영책임자 등은 훈련 종료 후 바로 훈련결과에 대한 강평 및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미비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되, 검토회의는 원칙적으로 훈련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p>

### ■ 각 비상상황별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어린이집 연간 훈련계획 수립은 해당연도의 훈련계획(훈련시기, 훈련유형, 훈련 주요내용, 재난종류)을 연초에 1회 수립함. 훈련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상황별 대응절차 실행 및 대응 물품을 준비하고, 훈련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함. 훈련계획은 지역적 특성을(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등) 고려하여 계획함.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 <표 III-8> 훈련의 유형

훈련유형	훈련내용
도상형	• 위기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에 따라 연습 참가자가 제반 조치사항을 도상 또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훈련
토의형	• 연습 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토의하거나 자유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발제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훈련
실제형	• 시나리오에 따라 연습 참가자가 인력, 장비, 물자 등을 동원하여 실제 행동으로 제반 조치를 수행하는 훈련

※ 출처: 행정안전부(2012).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훈련 기본지침/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재인용

#### ① 비상대응 운영계획(연간) 수립

### <표 III-9> 비상대응계획 연간 시나리오 내용(예시)

월	재난종류	발생장소	발생시각	비상대응계획 시나리오 내용	비고
3	화재	교사실	10:00	• 교사실에서 교사 컴퓨터 과부하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코로나19	-	08:00	• 통학차량 운전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	대응 (도상)
4	화재	C반	11:00	• C반 교실 공기청정기콘센트에서 스파크 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미세먼지	전체	등원전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대응 (도상)
5	화재	화장실	10:30	• 화장실 칫솔소독기에서 누전으로 화재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황사	전체	11:00	• 황사가 심각 상태로 발효된 상황	대응 (도상)

월	재난종류	발생장소	발생시간	비상대응계획 시나리오 내용	비고
6	지진	전체	10:00	• B반 교실에서 먼저 흔들림을 감지하여 전체에게 알리고 대피	대피 (실제)
	집중호우	전체	11:30	• 집중호우로 어린이집 앞 하천에 물이 불어나는 상황	대응 (도상)
7	화재폭발	보일러실	불시	• 어린이집 보일러실 가스 누출 후 폭발위험으로 대피	대피 (실제)
	태풍	전체	15:00	• 오전부터 태풍이 발효되었고, 오후 15시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지나갈 예정	대응 (도상)
8	화재	조리실	10:30	• 조리실에서 식사준비를 위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불씨가 번짐	대피 (실제)
	폭염	전체	-	• 지속되는 폭염으로 폭염경보가 발생	대응 (도상)
9	지진화재	전체	12:00	• 어린이집이 흔들리고 전기 합선위험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홍수	B반	등원전	• 전날 불어난 물로 어린이집 지하층이 물에 잠긴 상황	대응 (도상)
10	화재	화장실	10:30	• 화장실의 세탁기 내부에 습기로 인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강풍	전체	09:00	• 오전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황	대응 (도상)
11	지진	전체	10:00	• C반 교실에서 먼저 흔들림을 감지하여 전체에게 알리고 대피	대피 (실제)
	돌발상황	전체	-	• 어린이집 앞에서 괴한이 손도끼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	대응 (도상)
12	폭설	A반	11:00	•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하여 어린이집 지붕이 내려앉은 상황	대피 (실제)
	결빙, 한파	전체	15:00	• 한파가 2일동안 계속 되고 밤사이 눈이 내려 어린이집 앞이 얼어붙은 상황	대응 (도상)
1	화재	C반	11:00	• C반에서 생일잔치 중 촛불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영유아 돌연사	B반	10:00	• B반에서 우유를 먹고 잠든 A가 깨울 준비를 하려는데 창백하고 몸이 차가운 상황	대응 (도상)
2	지진	전체	불시	• 어린이집 창문의 흔들림을 감지하여 대피	대피 (실제)
	대설	전체	16:00	• 등원 후 눈이 내려 5cm두께의 눈이 쌓이고 눈이 오는 상황(대설주의보)	대응 (도상)

※ 출처: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용] 비상대피 훈련 시나리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재구성

■ **피난대책 수립**

구분	피난절차 및 방법				
경보설비	<input type="checkbox"/> 경종( <input type="checkbox"/> 전층 <input type="checkbox"/> 부분층) <input type="checkbox"/> 비상방송설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피난인원	<input type="checkbox"/> 상시거주(        명)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무(        명) <input type="checkbox"/> 유동인원 (        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input type="checkbox"/> ①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이동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인지
*노인(65세 ↑), 영유아(6세 ↓), 어린이(13세 ↓), 임산부 및 장애인					
② 피난경로	<input type="checkbox"/> 제1피난로				
	<input type="checkbox"/> 제2피난로				
	<input type="checkbox"/> 옥상피난	<input type="checkbox"/> 옥상출입 [ <input type="checkbox"/> 상시개방 <input type="checkbox"/> 상시폐쇄(잠금장치)] <input type="checkbox"/> 자동개폐장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옥상광장(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어린이10명	중앙계단을 통해 이동		초기대응대에서 인솔	
집결지	인원 파악하기 위해 지상주차장 ○○구역에 집결(내부 고립자 발생시 해당사항을 긴급구조기관에 전달)				

**참고) 작성요령**

용어설명 및 작성방법	
<p>① <b>재해약자</b>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p>① <b>재해약자</b>                      - 재해약자가 있는 경우만 작성                      - 평소에 재해약자 유형별로 인원을 파악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를 확보하고, 교육·훈련 실시</p>
<p>② <b>피난경로</b>                      재난유형을 부여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여 실제상황처럼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 화재발생 시 비상시 해당 영업장 시설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대피 경로</p>	<p>② <b>피난경로</b>                      - 해당 영업장·시설의 출입구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기재                      - 각 층의 피난기구(완강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기재</p>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 영업·시설 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 평가항목 마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학과 졸업자 등) 보유현황</li> <li>•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li> </ul>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li> </ul>			
재해대응체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li> <li>•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li> <li>•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li> </ul>			
교육 및 훈련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li> <li>•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li> </ul>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li> <li>•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li> </ul>			

#### 참고) 작성요령

#####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 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 시설 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온라인컨설팅 소방분야 체크리스트

소방분야 자가 점검표(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양식)

점검일시: 2020년 00월 00일      점검자: 000 원장(서명)      조치자: 000 (서명)  
**■ 관리영역 (소방계획서, 비상대피도, 문서관리편)** \*아래의 문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컨설팅 문서로 어린이집 자체점검 자료를 부분 수정하였음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해당 없음		
1-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물의 출입구 등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확인 <b>TIP</b>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1-2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b>소방계획서 작성여부 확인</b> <b>TIP</b>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어린이집은 소방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보관하며,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업데이트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소방계획서 샘플 예시(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1-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b>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b> <b>TIP</b>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실무교육을 꼭 받고 있는지 자격수첩 뒷면 및 실무교육 이수확인증을 통해 교육이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1-4	소방시설 점검	<b>자체점검 실시여부 확인(작동가능점검, 종합정밀점검)</b> <b>TIP</b> 소방시설 점검은 해당 어린이집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점검하는 것으로 규모에 따라 연1회 또는 2회 점검하게 됩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 수신기 하단에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서는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보고서는 2년간 자체 보관합니다.				
1-5	비상연락망	관계기관 연락처를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안전관리자 부재 시 재난 대응 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b>TIP</b> 비상연락망 작성 시 실질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1-6	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 부착위치(각층, 각실) 및 규격(B4이상 권장) 확인 ※ 기재내용: 비상구 위치, 대피경로, 대피요령,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b>TIP</b> 피난안내도 설치 시 해당층에 해당되는 대피도만 설치하고, “현위치” 표시를 강조하여 대피안내 혼선을 방지합니다.				
1-7	비상대응훈련	비상대응훈련 계획 및 평가서 기록 및 관리, 훈련 실시 여부(월1회) ※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참여 <b>TIP</b> 매번 같은 훈련 시나리오를 탈피하고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 소화설비 (소화기의 종류, 엔진펌프, 스프링클러)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1	소화기1	소화기 등 정상관리상태(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인 <b>TIP</b> 소화기 압력계를 확인하며, 지침이 노란색 범위에 있으면 압력이 빠진 것입니다. 압력이 빠진 소화기 사용시 소화 방사가거리가 짧아져 소화효과가 떨어지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2	소화기2	소화기 등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b>TIP</b>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33.3㎡(약 10평) 이상인 실에는 추가로 설치 <b>TIP</b> 소형분말소화기는 어린이집 내부 간막이 벽, 가구등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행 거름으로 20미터 마다 설치되어 사용 가능하여야 하며, 보육실 면적 33.3㎡(약 10평) 이상 시에는 비교적 큰 공간으로 분류되어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3	소화기3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 위치표지 부착 확인 <b>TIP</b> 소화기의 잦은 이동을 막기 위해 소화기 위쪽에 소화기 위치표지를 부착 함으로써 소화기 관리를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2-4	소화기4	소화기 등 정상관리상태(분말소화기 내구연한 10년 경과 여부) 확인 <b>TIP</b> 소화기 제조일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제조 후 10년 이상 오래된 소화기는 성능이 저하되므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2-5	소화기5	주방에 K급소화기 및 분말소화기 설치여부 확인 <b>TIP</b> 주방내 식용유 등은 일반 분말소화기로 소화 시 재발화가 일어날 수 있어 K급 소화기(은색)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용유 화재 외 일반가구 등의 화재는 붉은색 분말소화기 소화효과가 크므로 K급소화기와 분말소화기를 함께 주방 입구에 비치해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2-6	소화기6	자동확산소화기 등 정상관리상태(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인 <b>TIP</b> 우주선 모양의 자동확산소화기는 주방 천정에 위치하며, 일반소화기와 같이 압력계 상의 지침으로 정상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해당 없음		
2-7	소방펌프1	<p>펌프실 내 MCC 판넬 및 수신기 선택스위치 “자동” 또는 “AUTO” 상태인지 확인/ 펌프실 내 MCC 판넬 전원확인 등 정상 점검 확인</p> <p><b>TIP</b> 펌프는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가입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계장치이며,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동작 시 압력저하를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해 평상시 선택스위치는 “자동”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MCC 판넬 전원이 상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질적으로 소화펌프 점검은 비전문가가 점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방시설점검업체에 점검 위탁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p>				
2-8	소방펌프2	<p>엔진펌프의 경우 연료탱크 유량 2/3이상 유지 확인</p> <p><b>TIP</b> 엔진펌프는 소형 어린이집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대형 건축물에 속해있는 어린이집일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화펌프 점검은 비전문가가 점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점검 위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p>				
2-9	옥내소화전1	<p>옥내소화전함 앞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p> <p><b>TIP</b> 옥내소화전함 앞에 가구 등이 없는지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소화전 앞 바닥에 “장애물적치금지” 등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2-10	옥내소화전2	<p>옥내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여부 확인</p> <p><b>TIP</b> 옥내소화전함 상단에 옥내소화전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표시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지와 달리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되는지, 가려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2-11	옥내소화전3	<p>옥내소화전함 내, 외부에 외국어가 병기된 사용설명서 부착여부 확인</p> <p><b>TIP</b> 소화전 활용법을 한글과, 외국어로 표시하여 사용에 용이하도록 옥내소화전함 외부표면에 부착하고, 소화전함을 열었을 때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함 내부에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p>				
2-12	옥내소화전4	<p>옥내소화전함 내 밸브, 호스, 관향 향시 연결 확인(꼬이지 않도록 관리)</p> <p><b>TIP</b> 소화전은 소화기로 소화하기 어려운 화재 시 사용하는 수동 소화설비로서 2명이 조작하여야 하며, 신속한 소화를 위해 소방호스는 상시 연결되어야 하고, 소화전을 펼쳤을 때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에 소화 가능하도록 소방호스 길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시 소화전이 복도 외 일부 보육실 안에 위치한다면 보육실 입구에 소화전 표시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p>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해당 없음		
2-13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p><b>유수검지장치의 밸브류 관리 및 접근성(물건 적치 포함) 여부</b></p> <p><b>TIP</b> 유수검지장치(알람벨브)는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장치로 수동작동 및 점검을 위해 유수검지장치실의 점검구 앞이나 내부에 불필요한 가연물이나 물건의 적재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2-14	스프링클러 (헤드)	<p><b>헤드의 미경계구역, 헤드의 손상, 살수장애(헤드 주변 60cm 이내 공간 확보) 여부</b></p> <p><b>TIP</b> 스프링클러 헤드작동시에는 우산모양으로 살수되므로 그 주변으로 전등 또는 미술공작물 등으로 살수의 장애되는 부분이 있는지, 스프링클러헤드 테두리(왕) 마감재로 탈락, 페인트 오염, 헤드와 천정마감부분 틈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2-15	스프링클러 (배관)	<p><b>스프링클러 배관 압력, 파손, 결함, 누수, 부식, 보온처리 여부</b></p> <p><b>TIP</b> 스프링클러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면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보온재 등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배관에 대한 점검은 소방시설점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시기 바랍니다.</p>				
2-16	소방펌프	<p><b>펌프정상 작동여부 확인</b></p> <p><b>TIP</b> 말단시험밸브 개방하여 소방펌프 정상작동 및 방수압 등 확인</p> <p><b>TIP</b> 토출측 개폐밸브 폐쇄하고 MCC 판넬 소방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 또는 “HAND”로 전환 후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 및 확인</p> <p><b>TIP</b> 소방펌프는 임의작동 시 고압으로 배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점검숙련자가 하거나, 소방시설점검 전문업체에 점검을 위탁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p>				
2-17	송수구	<p><b>송수구 관리상태 확인(마개부착, 송수구 표시 및 송수압력 범위 표시)</b></p> <p><b>TIP</b> 송수구는 화재 시 육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수가 물탱크용량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설비이며, 건물 옥외 벽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련 점검항목을 확인하시고 나무(조경) 등으로 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수구 마개 등이 외부에 있어 부식되기 쉽거나 마개 안에 담배꽂초, 낙엽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정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편)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3-1	화재감지기	<p>화재감지기 정상설치여부(가운데 최상단) 및 작동여부(미경계부분, 적응성)</p> <p>☞ 단독형감지기: 보육실, 창고, 복도 등 구획실(150㎡마다)</p> <p>☞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여부 확인(물체 시험버튼 PUSH)</p> <p>💡 TIP 감지기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전기선으로 연결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단독형감지기(건전지)로 구분됩니다. 감지기가 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기선 방식의 감지기의 경우 점검업체에서 점검비로 점검하며 단독형감지기는 샘플로 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형 감지기는 배터리 타입이라 방전될 수 있으므로 배터리 교체시기를 잘 관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p>					
3-2	발신기	<p>발신기 정상설치여부 및 작동여부(위치표시등, 경종 음량 등)</p> <p>💡 TIP 발신기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발신기내의 지구경종과, 수신기 상단의 주경종이 동시에 시끄럽게 울리게 됩니다. 소리는 임의로 수신기에서 음향 정지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꺼지거나 반드시 발신기 버튼을 처음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발신기 점검경험이 없다면,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 시 점검법을 교육 받으신 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피난훈련 등에 발신기를 활용하시면 실제 화재 상황과 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p>					
3-3	자동화재 탐지설비-1	<p>수신기 정상 관리, 접근용이성 확인</p> <p>💡 TIP 수신기는 동작, 점검이 쉬운 공간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창고와 같은 사람이 없는 곳에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시건되어 접근 불가능한 공간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p>					
3-4	자동화재 탐지설비-2	<p>수신기 작동여부(동작시험,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확인</p> <p>💡 TIP 수신기는 제작업체마다 설치 시기에 따라 그 모양과 점검방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예비전원시험 정도만 실시하여 보시고,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 시 점검법을 교육받으신 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p>					
3-5	시각경보기	<p>시각경보기 설치장소 및 연동 확인</p> <p>💡 TIP 시각경보기는 발신기 및 감지기 동작 시 화재신호와 연동되어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는 청각장애우를 위한 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동작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고 점검 시 화재신호와 연동되어 동작(불빛 점멸)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3-6	자동화재 수보설비	<p>자동화재수보설비 위치, 전원, 관리상태 등</p> <p>☞ 메시지내용: 화재발생 사실, 어린이집의 명칭, 주소, 관계자 전화번호</p> <p>💡 TIP 수보설비의 점검은 제작업체마다 그 모양과 점검법이 다양합니다.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 시 점검법을 교육받으신 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상시 전화선이 연결되어있는지 전원이 상시 공급되어 있는지 육안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p>					

■ 피난구조설비 (구조대, 유도등편)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1	피난기구1	<p>피난기구 설치장소, 적응성, 관리상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이하: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li> <li>☞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li> <li>☞ TIP 피난기구는 계단을 통한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공간에 설치하는 기구이며,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기구의 사용 편의성을 평상시에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특히 미끄럼대의 경우 피난훈련 시 유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내려오는 곳에 충격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보폭한 부분이 있는지 유의하여야 합니다.</li> </ul>					
4-2	피난기구2	<p>피난기구 손상여부, 근처 장애물 적치, 위치표지·사용방법 표지 부착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P 가급적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을 위주로 훈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다론 통로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피난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근처 장애물 제거와, 사용방법 등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점검이 필요합니다.</li> </ul>					
4-3	유도등1	<p>유도등 설치 위치의 적절성, 경유거실 추가 등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li> <li>☞ 복도, 계단통로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li> <li>☞ TIP 유도등은 계단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등으로서 항상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설치된 유도등의 경우 화재 시에만 점등이 되는 방식(3선식)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저축되지 않으나 항상 피난구를 인지할 수 있게 상시 점등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유도등을 점등 가능함).</li> </ul>					
4-4	유도등2	<p>유도등 전원(점등여부 등), 예비전원, 관리상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전원 시험: 적색등 점등 시 시험버튼 PUSH하여 전원상태 확인</li> <li>☞ TIP 유도등은 정전 시에도 축전지를 통한 예비전원에 의해 상시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항상 켜져 있는지 축전지 수명이 다했는지를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눌러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점검스위치를 눌렀을 때 잠시 깜빡거리고 일정한 밝기를 유지한다면 정상상태입니다.</li> </ul>					

■ 피난방화설비 양방향대피편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5-1	피난로 (비상구, 복도)	양방향피난 여부, 비상구규격, 출구이격(장변 1/2이상), 경로상 주방 등 화기시설, 장애물 적치, 잠금(쉽게 잠금해지시 제외) 등 장애 확인  어린이집의 영유아는 키가 작기 때문에 비상출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여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판을 설치  TIP 피난로는 기본적으로 한쪽이 화재로 막혔을 때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피난동선은 보육실 → 복도(통로) → 계단 → 피난층(옥외)과 같이 안전수준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위험공간을 경유하는 피난방식이나, 잠금장치설치 등으로 피난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유도선(축광표지)이나 피난구 안내문 등을 데피로 바닥이나, 복도 하단부, 피난구에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2	직통(피난)계단	계단의 구조, 피난용이성, 계단간 통로연결 폐쇄,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TIP 2개 이상의 계단일 경우 계단은 통로나 복도로 연결되고 계단참이나 입구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단과 계단사이에 벽체를 설치하여 1방향 피난이 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3	방화문(방화셔터)	설치적정성, 관리상태 확인(도어스토퍼 상시 닫힘 또는 감지기 연동 닫힘)  TIP 계단방화문이나, 방화셔터 하단에는 장애물이나 문고임장치, 고정끈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등이 상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가스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가스배관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6-1	가스용기 등	<p>설치위치(옥외), 용기 및 밸브 등 관리상태</p> <p><b>TIP</b> LPG가스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 장치(사슬, 띠)등을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눈과 비를 피할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시가스(LNG)는 가스관으로 가스가 공급되므로 용기가 없습니다.</p>					
6-2	가스누설경보기	<p>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주방, 보일러실 등)</p> <p><b>TIP</b> 가스누설경보기에 상시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전원코드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LNG(도시가스)의 경우는 누출가스가 가버우므로 가스누설탐지부를 천정에 가깝게 위치하고(30cm이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심권 시설은 대부분 LNG) LPG가스는 반대로 바닥부위에 위치합니다.</p>					
6-3	가스배관 등	<p>배관 누설 점검(탐지기 활용) 및 고무호스(3m이하) 등 관리상태 확인</p> <p><b>TIP</b> 가스배관 연결부위 등은 비누거품을 이용하여 점검 할 수 있습니다. 가스점검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방문 시 누설여부를 점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6-4	연소기	<p>연소기(보일러/가스렌지) 상태, 배관 접속부 누설여부, 통풍 상태</p> <p><b>TIP</b> 연소기 설치공간은 환기(배기)가 잘되고, 상단 후드 부분을 상시 청소하여 기름때가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화재위험).</p>					

■ 위험물 관리 보일러 연료 위험물 수납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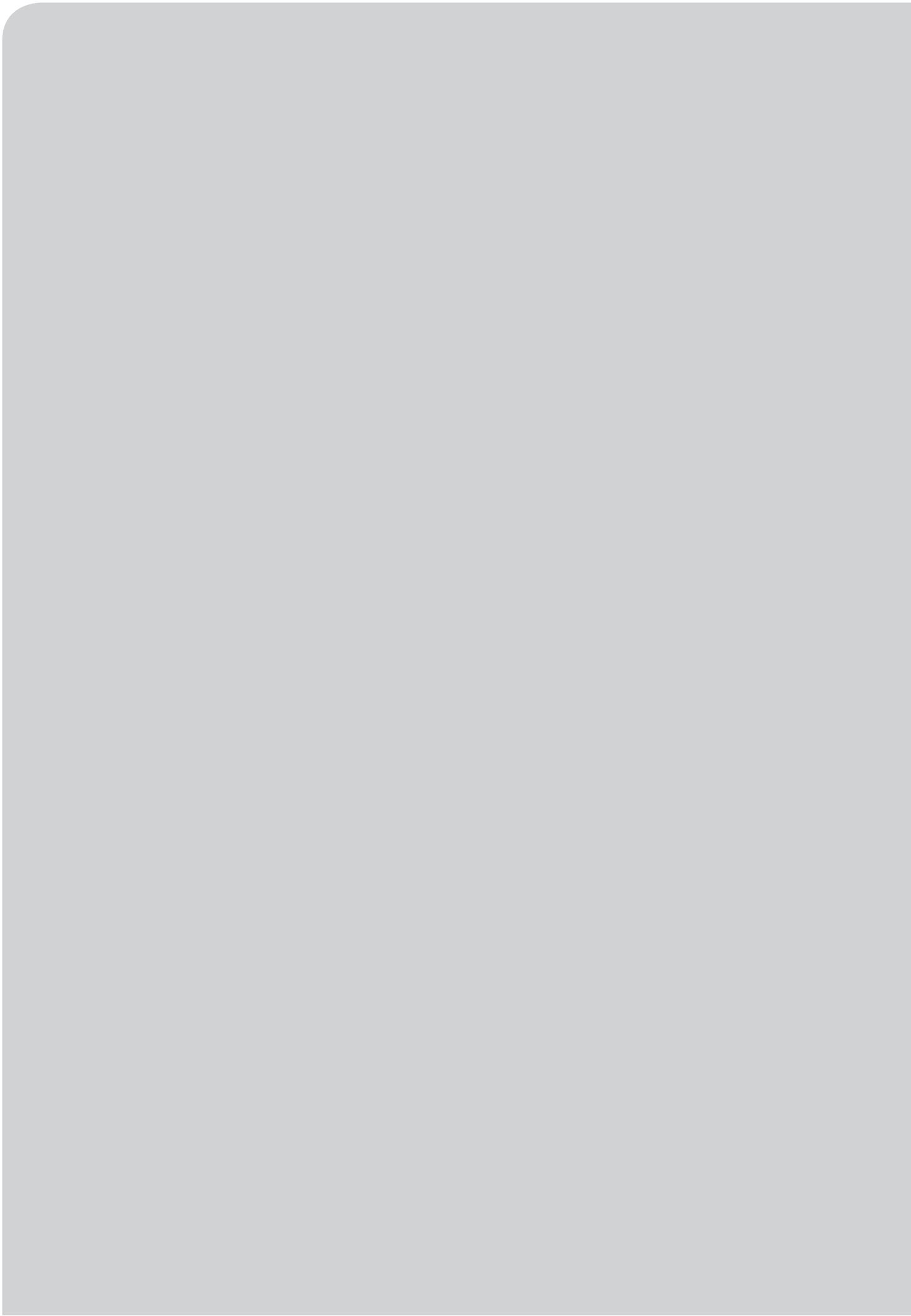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7-1	위험물 관리	<p>보일러 연료등 위험물 허가품목·표지 등 정상 관리상태(범,조례 등) 위험물 수납용기 보관상태 및 운반용기 확인(전도방지, 가연물인근 보관, 운반용기 제한용량, 품명·수량 표지 등)</p> <p><b>TIP</b> 어린이집은 보통 휘발유, 경유, 페인트류 등의 위험물을 소량 취급하게 되는데 대부분 위험수준인 지정수량 이하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험물을 취급 시 전용용기에 해당 물질 정보와 용량을 기입하고 취급 주의사항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주변에는 가연물 등을 치우고 환기 가능한 전용 창고 등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p>					

■ 전기안전관리 멀티탭, 전선 누전차단기 점검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8-1	전기안전 관리1	<p><b>배전·분전반 관리상태(보호판, 분전반 내, 앞 물건방치 등)</b></p> <p><b>TIP</b> 분전반은 전기사고 및 전기시설 교체, 관리시 차단기 등을 내려야 하므로 분전반함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전반을 열었을 때 각 실별, 전기시설별 명칭 기입과 접속부 보호판(아크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p>					
8-2	전기안전 관리2	<p><b>전선배선 접속상태 및 전선피복의 먼지·노후·손상 여부</b></p> <p><b>TIP</b> 노후되고 꺾인 전선, 절연피복 탈락된 전선, 먼지 쌓인 전선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선은 허공에서 덜렁거리지 않게 벽부에 보호관으로 고정시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8-3	전기안전 관리3	<p><b>콘센트 적정관리 여부(방직형, 누전차단콘센트, 문어발식접속, 정격용량접속, 노후, 탄화, 정상 꽂힘, 접지상태, 안전덮개 설치 등)</b></p> <p><b>TIP</b> 확장실, 탕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 근처는 덮개가 있는 방직형 콘센트를 사용하고, 오래되고 노후된 탄화콘센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시설은 콘센트에 단단히 고정되어 꽂힘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쓰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유아들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용량이 큰 전기시설은 문어발식 접속을 하였을 경우 화재발생 우려가 있으니 단독콘센트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용품은 KC인증마크를 확인하여 구매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8-4	전기안전 관리4	<p><b>전열기 관리 상태 확인(인가여부, 주변 기구등과의 이격, 점검표 등)</b></p> <p><b>TIP</b> 동절기 전열기(히터, 전기장판) 등은 인가된 전열기구만 사용하고 퇴근 시 관련 시설의 관리여부 점검표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p>					

■ 방염관리 방염대상물, 방염라벨, 방염성능검사 확인 표시

번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 의견 및 수정 사항	조치사항 및 일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9-1	방염 관리	<p>실내장식물 등 방염대상물 방염라벨,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 구비 여부</p> <p><b>TIP</b> 방염은 붙이 쉽게 붙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콘크리트, 석고보드 등과 같이 불연재료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튼, 블라인드, 전시용 무대합판 등은 방염처리 대상으로서 관련 물품 구매 시 방염 인증품인 것을 확인하여 관련 인증스티커 부착,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p>					



# IV

## FAQ



## Q.1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어린이집 기준과 적용시점, 유예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A

-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공포일 : '21.1.26.
- ☑ 다만,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이 법 시행 당시 아래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됩니다.
  - ① 개인사업주
  -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입니다.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도급, 위탁 등 업무를 맡기는 '법인이나 기관(위탁자)' 전체 사업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수탁운영 시 **해당 사업장 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제3자의 종사자, 법 제5조)의 규모가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기는 ②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22. 1.27.자로 바로 적용을 받고,
  - '22.1.27.부터 '24.1.26.까지 기간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그 날부터 법이 적용이 되며,
  - '24.1.26.까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부터 시행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22. 1.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법 적용을 받았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대재해 발생일 기준).
  -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어린이집은 법 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

Q.2

어린이집 기준으로는 근로자 수나 시설규모로 보았을 때 중대재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이면 어린이집도 포함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 사업장 직영의 경우

사업장(위탁자)에 따른 어린이집이 직영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어린이집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의 적용을 받는 기준이자 보호대상(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 될 것입니다(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이 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 사업장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위탁자)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는 않으나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이라면 수탁자의 종사자(보육교직원)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탁체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기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예시, 식품 제조 또는 관리 결함으로 인한 식중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고, ② 공중이용시설로서의 어린이집 설계, 설치, 관리상의 재해(예시,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붕괴 등)에 대해서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만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사업장(위탁자)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해 사업장(위탁자)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받는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탁자와 함께 중대재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어떻게 개념이 다른지요?

**A**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 중대산업재해란 주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중 가~다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여기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나 아동에 대한 사망이나 부상은 해당이 없으며, **보육교직원, 공사 등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사망사고나 부상, 질병 등의 산업재해** 결과가 위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어린이집 포함)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이용자(학부모나 영유아 포함)나 그 밖의 사람(지나가는 행인 포함)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4**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육교직원이 우울증 등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A**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인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 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에 따른 24개 유형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과거 보육교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를 보면, 발병 직전까지 1주일 63시간 20분 근무(휴게시간 포함) 한 점, 퇴근 후에도 혼자 야간근무, 교사 배치기준 초과 아동 보육 등 구체적인 근무환경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평소 우울증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즉 산업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개인 상담, 업무분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공평하고 근로기준에 적합한 업무 지시 및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평소 업무상 위험요인이나 질병 유발 등이 가능한 요소를 없애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Q.5

조리사가 특별한 사고 없이 단순 반복 업무로 어깨 통증을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어깨근육이 파열된 사례도 해당하나요?

A

-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조리실의 재료, 시설 및 환경 상의 문제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조리사 1명의 어깨 근육이 파열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조리사의 어깨 근육 파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Q.6

- 1)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예정인데도 어린이집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해야 하나요?
- 2) 기업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어린이집 안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체에 위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종 책임자는 위탁체 대표인가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원장인가요?

A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 이러한 조치에 관해서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통상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린이집 원장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현장 운영 책임자로 시설 안전관리책임관입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기업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라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규정 등에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명시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업무분장) 구성 또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담당자의 현장관리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및 체크리스트를 공유하여, 기업 전담 안전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담당자와 협력, 소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 또는 수탁체)** 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직영이나, 위탁 등 여러 계약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예산이나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최종 기업이나 위탁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예산이나 인력 배치 등 직장어린이집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나 위탁체에서도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승인 및 지원,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등의 노력 등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 어린이집 안전 등에 관련한 규정은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에 이미 안전관리 부분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사고예방과 모니터링, 안전조치 노력 등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Q.7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A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대부분 기업에서 전체 시설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체 건물에 화재사고 발생 시 2층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스프링클러 미작동, 화재경보기 고장, 비상구 잠김, 아동이 보행하기 어려운 계단 높이 등으로 보육교직원이나 아동의 피해가 커졌다면 원장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Q.8** 어린이집에서 원장, 교사가 들어야할 교육이 있나요?

**A**

- ☑ **중대산업재해 관련 대응방안에서 교육이수** 관련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고받아야 합니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 **중대시민재해 관련 대응방안에서 교육이수** 관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고받아야 합니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대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 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 **이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교육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참고

Q.9

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현재 편성해놓은 수선유지비나 시설 유지보수비만 있으면 되는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 ②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4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마련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린이집 간판이 태풍 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를 교체하는 시설 유지보수비 등 예산이 필요로 하므로 후순위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로 한 예산으로 선 편성하고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였는지가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 확인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예산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종사자 의견 청취 과정 포함).
- ☑ 이 때 세목은 별도로 한정된 것은 없고,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은 인건비에 편성하고 시설,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은 해당 각 목에서 편성한 후 집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Q.10

어린이집이 공사·관리 일체를 한 업체에 위임계약한 경우로, 공사관리업체에서 B 공사업체를 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실시하다 중대재해 사고가 난 경우, 이 때에도 원장이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지요?

A

☑ **공사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 어린이집 원장(건설공사 발주자)은 공사기간 동안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 이 경우 발주자인 원장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사관리업체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원장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의 종사자에 대한 사망, 부상 등이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어린이집 교직원의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A

- ☑ 어린이집 교직원의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교직원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교통사고 역시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학차량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일어난 사고 원인이 어린이집에서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등 미흡, 시설 노후화나 안전시설 미부착 등 통학차량 안전의 실질적인 관리가 부실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12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관련 상해사고나 식중독 사고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가요?

A

- ☑ 중대시민재해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의미하며, 식품 등을 제조(가공 포함)하여 위생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집(연면적 제한 없음)이 해당됩니다.

다만, 외부 업체에 의해 식품 등을 사오거나 공급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 보관 등 관리상의 소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영유아, 일반시민 등이 재해를 입는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어린이집에서 단순히 아동 간 다툼이나 아동 개인의 부주위로 일어난 상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로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영유아 10명 이상이 골절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생 등 어린이집의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일어난 사고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다만, 식중독의 경우에는 급식의 재료 관리, 제조, 및 관리상 결함으로 식중독이 일어나, 식중독 증세로 10명 이상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는다면 중대시민재해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Q.1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이전에 원장에게 주어진 권리나 보호,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A

-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에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장 등 경영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 집안전공제회의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접수를 통해 보상담당자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 위험 요소나 설비에 대한 안전컨설팅(소방 관련 등)도 시기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또한 원장 등 경영책임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과 연계한 정부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지원사업은 안전보건 관리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으로 자세한 정부지원사업은 참고자료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사이버 감사실

본 자료의 내용은 직장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집필진의 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히며, 무단복사, 무단인용 및 무단복제를 불허합니다(비매품).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  
**처버버** 대응매뉴얼  
**2** **번**

---

**발행일** 2022년 4월

**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발행처** 직장보육지원센터

**주소** 서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Tel. 02-2670-0411~29 / Fax. 02-2670-0422

부산사무소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55 5층  
Tel. 051-320-8182~7 / Fax. 051-328-5276

대전사무소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대전둔산회관 19층  
Tel. 042-870-9111~7 / Fax. 042-870-9119

**홈페이지** [www.comwel.or.kr](http://www.comwel.or.kr)

---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매뉴얼  
2법



비매품/무료



ISBN 979-11-85529-35-6